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08. 12.

행 정 위 원 회

# 2008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행정위원회 ]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감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시를 제고하고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고자 함.

## 2. 감사기간

○ 2008. 11. 26(수) ~ 12. 2(화)

## 3. 감사대상 및 사무

○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2호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재정경제국 소관, 보건소 소관)

○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해당사무
-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자치구사무

####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행정위원회 위원장

( 가나다순 )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
심용진	윤동규	고기판, 고현순, 구애라, 김동식, 김영진, 박성호	전문위원 사무국직원 속기사

#### 5. 감사일정 및 장소

월 일	감사장소	감사대상	비 고
2008. 11. 26 ~ 2008. 12. 1	영등포구청 (제1감사장)	감사담당관 행 정 국 재정경제국 보 건 소	- 현황보고 및 청취 - 서류확인 - 개별감사 - 현장확인
2008. 12. 2		수감사항 정리	- 각 위원별
오전 오후		공개질의, 답변	- 강평

※ 토,일요일 : 지역 의정활동 등

## 6.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가. 일일보고

- 감사직후 부위원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여 본회의 상정의결

## 7. 시정 및 지적사항 : “별첨”참조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행정위원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1	2008. 11.27 (목)	김영진	지방화시대는 지역주민들과 구정업무를 추진하는 구청장과의 대화가 절실히 요구되나 실제 주민들과의 만남의 시간은 연초에 실시하는 신년 인사회 시 짧은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지역별 특별한 사안이 발생시에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연중 1회뿐인 신년인사회 행사에 실시하는 주민들과 구청장과의 대화시간만으로는 구정업무 추진에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힘들며 또한 구정업무 추진방향과 목적을 해당 주민들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움	현재 신년 인사회 시에만 실시하는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분기별 또는 분기별 정기적으로 확대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에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은 물론 지역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등과 합동으로 만남의 시간을 추진하기 바람
2	“	김동식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주민의 호응도가 낮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일부 프로그램은 동우회 전환 및 지역 권역화 시켜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	주민의 호응도가 낮은 10명 미만 프로그램은 폐강토록 하고 비록 10명 미만이지만 불가피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권역화 운영을 검토 할 것이며,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문화, 여가 프로그램은 분기별 운영비를 지원하여 동우회로 전환토록 하는 등 프로그램 다양화를 유도
3	“	김동식	교육경비보조금 우선 지원 대상학교 선정이 미흡하고, 보조금지원 집행 확인과 정산서류징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절실한 대상 학교 선정시 필요시에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이 현장을 실사토록 하여 우선대상 학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교부금 대상 학교가 선정된 후에는 교부금을 일괄 교부하지 말고 지원금액이 많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 여부를 확인한 후 공정별(계약, 착공, 중도금 지급 등)로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할 것이며, 특히, 지원금액이 많고, 장기사업의

				경우에는 구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4	11.27 (목)	고현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직능단체의 지원금에 대한 영수증 처리 등 사후 정산이 미흡 함	각 동에서는 지원 예산에 대한 영수증 처리 확인을 강화하여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5	11.28 (금)	김영진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청소년 지도협의 등 구 및 동별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각종 직능단체의 규모 및 인원이 비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봉사활동의 내용은 거리질서캠페인, 지역방범활동 등 유사한 활동이 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단체는 단체 활동 고유의 목적인 공익적 봉사활동 실적이 저조함에도 지속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기능이 유사한 직능단체는 통폐합 등을 통한 직능단체 의 재구성이 절실히 요구되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및 진행할 수 없으므로 돌출된 문제점을 냉철히 분석하여 행정안전부 등 상위 기관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구에서 활동하는 각종 직능단체의 관리감독을 관련법에 의거 철저히 실시하고 유명무실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여야 할 것임.
6	“	김영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반상회 운영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반상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역 언론 수렴 및 구정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반상회를 주관하는 구청 및 지역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실질적인 반상회 개최가 유명무실 함	각 동별 통·반장 회의를 통해 반상회의 개최의 목적 및 실효성 강조 교육을 실시하여 반상회 참여 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참석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 언론 및 건의사항이 수렴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철저를 기하며 체계적인 반상회 실적 관리로 반상회 개최 우수반과 반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하기 바람

7	11.28 (금)	심용진	주민자치위원의 회의참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의동은 다수의 인원이 수차례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자치위원의 회의참석 실적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각 동별 회의참석이 저조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회의참석 독려를 강화하거나 일정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여 주민이 바라는 주민자치위원의 활동상을 정립하기 바람.
8	“	심용진	교복을 재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으나 이에 대한 행정력 및 예산에 비하여 이용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량의 품목을 확보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교복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으니 학교를 직접 방문 하여 본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해서 홍보매체 및 직능단체 등 각종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수령자)에 대한 수불관계를 개인별로 상세하게 기록하기 바람.
9	“	박성호	구에서는 공무원의 청렴도 개선을 위하여 청렴향기 OK시스템구축, 해피콜운영, 전화점검 등 청렴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서울시 청렴지수 조사결과에 의하면 3권의 지적사항이 있는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철저한 조사로 사후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임	구에서는 청렴향기 OK시스템이나 해피콜 운영을 철저히 운영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청렴도 개선 효과가 실효성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0	“	박성호	시간외 근무가 기존의 카드식 체크에서 지문인식기로 바뀐에 따라 과거에 지적되어 왔던 대리체크의 문제점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체 초과근무 시간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이 근무시간만 연장된 것으로 공무원노조에서 요구	시간외 근무 인정시간을 현행보다 50% 이상 감축하고 감축예산은 인센티브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효율과 직무만족도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하듯이 현행의 초과근무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	
11	11.28 (금)	박성호	여의도동 청사건립 m <sup>2</sup> 당 2,507천원, 3.3m <sup>2</sup> 당 8,27천원, 당산동 다목적공공청사건립비 m <sup>2</sup> 당 2,931천원, 3.3m <sup>2</sup> 당 9,674천원이며 향후 계획중인 제2청사건립 비용이나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원가도 위와 비슷한 실정으로 이는 적격심사제 입찰방식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바, 입찰방식의 개선이나 예정원가산정을 공사원가분석방법을 통해 원가절감을 하여 예산낭비를 줄여야 할 것임.	투입된 공사원가에 매니지먼트 비용가산 계약방식의 비용 산정이나 적격심사입찰방식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공사원가분석을 반영한 예정가격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공사비가 과대 책정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 절감하기 바람.
12	“	박성호	예를 들어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세척용역은 용기세척 및 용기주변 청소용역을 외부업체에 용역 발주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용역사에서는 용기주변의 청소를 철저히 하지 않으므로써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청소과에서는 별도로 주변정리를 위하여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용역사와의 계약조건 4조 3항에서 용기를 세척함에 있어 폐비닐봉지 수거 및 용기주변 청소를 병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사가 계약 불이행시 우리구에서는 독과점체제로 인하여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대금지급	독과점 체제가 형성된 시장의 용역계약은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우리구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조건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거부와 손해배상청구 등 계약이행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고 향후 용역계약시 용역사 선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의 거부 등 대응이 어려운 현실로 현재의 용역사는 예산의 부족편성을 이유로 차기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구 대응도 이에 맞추어 주려는 방향으로 운영 예정으로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독과점 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개선이 요구 됨.	
13	12. 1 (월)	심용진	신길동 소재 A정육점이 원산지표시 미이행으로 서울시 합동단속에서 적발되어 2008. 10.25~10.31까지 7일간의 영업정지를 받았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영업정지 기간동안 실제로 휴업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이 없음	영업정지 이후 행정처분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간 중 휴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일 복명서 및 사진 등을 첨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4	“	고현순	영등포 구민회관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태주이엔씨(주)가 구청에 문서 접수시 신청서에 사용계 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신청서의 접수일자 및 내용상 일자가 차이가 많음	각종 문서를 접수하여 문서를 처리할 경우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감(사용계 인감)도장을 철저히 확인하여 날인을 받고, 문서 접수시에는 접수일자를 철저히 확인하여 문서를 접수하기 바람.
15	“	박성호	여의도동청사신축공사, 제2청사 신축계획 등 대부분의 공사비가 민간건축공사비에 비하여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음은 물론,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서도 3.3㎡당 6백만원대 이나 우리구에서는 대부분 3.3㎡당 7백만원이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바, 공사비의 과대책정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급공사비를 민간건축공사비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여 예산낭비의 소지를 없애고 관급공사입찰에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16	12. 1 (월)	박성호	<p>현재 우리구는 5국 담당관 121팀2반 18동 36담당 1소 4과 1반 16팀 사무국 전문위원 3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업무의 세분화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우선 해당부서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식 민원을 처리하기 이전에 해당 부서 찾기부터 불만이 생기게 되고, 업무 분장이 복잡하게 되어있는 관계로 몇 번씩 이부서 저 부서를 전전하게 되고 부서간 업무전가, 책임 떠넘기기 식의 대응이나 인력 재 배치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 찾기는 더욱 힘들게 되는 사례가 있음</p>	<p>서울시의 일부 구에서 하는 방식으로 최초 민원 접수자가 끝까지 민원처리를 완료하는 <b>one-stop service</b> 행정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여 수요자위주의 주민편의 행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하기 바람</p>
17	“	박성호	<p>구청 자전거 주차타워는 당초 780백만원의 사업으로 바닥면적 80M2에 총 120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었습니다. 당해 6월부터 10월까지 일 평균이용도는 62대에 불과하고 평균적으로 1시간가량 주차를 한다고 가정하면 동시주차대수는 7.7대에 불과합니다. 이 주차타워의 월운영비는 구청공무원의 인건비외에 전력비 등 6만원과 내구연한 5년을 감안하면 월 1300만원의 감가상각비가 소요됩니다. 이에 토지에 대한 기회비용등을 감안하면 현재 이용객에게 주차이용료를 환원 정도 부과해야 겨우 원가보상이 되는 사업이 될 것임</p>	<p>자전거 주차타워의 경우 일 평균이용대수가 62대에 불과하고 동시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10대 미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도의 이용율은 거치대를 이용한 노상주차로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투자비와 유지비를 낭비하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서울시의 자전거 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전거 도로 활성화계획은 현재 우리구의 경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사항은 전체 계획의 10% 미만으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도로 폭의 축소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성과위주의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의 경우 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 투자효과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투자효과는 투입액에 대한 기대효과를 계량적으</p>

				로 평가하여 한정된 예산의 배분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초기 단계에서 당초계획의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18	12. 1 (월)	구애라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양평동 소재 이용업소 2곳을 현장 확인한 결과 자율점검표 작성은 대체로 잘하고 있으나 업소 내 청소상태가 다소 불량하고, 이발기구(빗, 가위, 드라이 등) 정리정돈 상태가 미흡함	자율점검표의 항목을 좀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점검표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고, 업소 내 청결상태 및 이발기구에 대한 정리정돈 등 계도를 철저히 하기 바람.
19	12. 2 (화)	김동식	현재 구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각종 종이류 책자 중 직원 내 부용 책자가 형식적 관례적으로 발간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음	구민에게 제공하는 종이류 책자를 제외하고 직원이 업무용 또는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는 각종 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종이류 발간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발간이 불가피한 책자를 제외하고는 직원만이 사용하는 각종 종이류 책자는 구청 내 포털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
20	“	윤동규	세입징수 포상금은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도록 관련 조례에서 그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세입징수 증대에 따른 개별 포상금 지급이 아닌 공동 분배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의 지급대상에서 정하는 규정대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21	12. 2 (화)	윤동규	청사건립기금은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통합관리기금 출연	기금관련 공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는 조례에서 정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토록 할 것이며 또한 80억원

			미이행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12조에서 정한 예탁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의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대로 예탁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2	“	운동규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의 운영과정에서 용자계획 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용자 대상자 선정에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용자회수 대상자에 대한 조기상환 등 사후관리가 미흡함.	앞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4조의 용자계획의 공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대상자 선정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용자대상 우선순위와 적격자를 선정토록 할 것이며 식품제조업을 제외한 영업시설을 이전한 용자업소 및 폐업, 허가 취소된 업소에 대한 조기상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3	“	고기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한전주에 대해서는 구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통신망 사용을 위한 한전주 사용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우리가 부과하는 점용료는 1본당 770원인 반면 한전에 지불하는 사용료는 본당 900원을 지불하는 등 분담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음	구에서는 도로점용 산정기준표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고 한국전력공사는 배전 시설 공사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사용료를 부과한다고는 하나 동일한 공무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부과 및 징수체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4	12. 2 (화)	고기관	현재 각 동주민센터 및 통반장이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용도별로 한국형, 특수형, 다용도형으로 29,54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다용도형	각 동주민센터 및 통반장이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은 교체하거나 또는 방독면의 정화통만 교체하여도 내구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p>방독면은 27,453개로 구매 시기는 2000년도 6,520개, 2001년도 6,821개 2002년도 7,243개, 2003년도 6,869개로 내구연한이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방독면은 방독면으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고 있음</p>	<p>여부를 검토하여 이번기회에 민방위 물품 전반에 대한 정비를 하고, 아울러 일반 구민에 대한 화재방 교육이 전무한 만큼 화재방 교육에 대한 방안도 모색하기 바람.</p>
25	“	고기관	<p>일부 위원회는 위촉장을 수여받고도 1년에 1회도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 위촉 시 특정인만을 위촉하거나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을 재 위촉하는 사례가 있음</p>	<p>각종 위원회를 재 정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고 위촉한 위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위원은 재 위촉을 고려하여 위촉토록 할 것이며 특정인에 한하여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최대한 위촉 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등 위촉위원 선정과 위원회 회의 참석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율성 있는 위원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바람.</p>
26	“	고기관	<p>고위정책과정은 교육장이 지역적 편중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지고 중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이 발생하고 있으며, 영등포아카데미는 지역별 참석자 편차가 심하여 문래동, 양평1동, 당산1동은 참석자가 많은 반면 신길1동, 신길5동, 대림1동은 참석자가 적고 호응도에 비해 장소가 협소하여 인원 제한이 따름</p>	<p>구민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 접근이 용이한 구민회관 중정홀 등 양호한 교육장소를 물색하기 바람, 지역별로 교육 참석자가 적은 신길1동, 신길5동, 대림1동 주민에 대해서는 홍보부족 또는 접근성의 문제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많은 구민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27	12. 2 (화)	고기관	<p>2007년도 12월 15일 이후 연말까지 각 부서에서 발주한 계약 건은 114건으로 1월 31일 계약도 15건에 달하는</p>	<p>앞으로는 부서별로 연중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중 특히 연말의 집중적인 계약을 지양하여 편성된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p>

			등 연말에 계약이 집중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금년에 편성된 예산도 아직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음	
28	“	고기관	시설현대화사업에서 10%외 자부담금액을 소유주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하여 영업하는 영세한 상인에게 부담원칙이 돌아가므로 상인들의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고 선정업체로부터 10%의 부담금액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음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계획부터 진행과정까지 현장점검 및 확인을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실시공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바람.
29	“	고기관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이 신길3동 258-14번지는 최초 407,000천원에서 93,600천원으로 하향조정, 신길6동 1504번지는 76,000천원에서 171,000천원으로 상향조정, 신길5동 440-88번지는 321,000천원에서 460,000천원으로 상향조정이 되는 등 최초 조사 당시보다 개별주택가격의 조정의 폭이 큰 것으로 보아 최초 주택가격조사 또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음	뉴타운 지구내 주택 및 노후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히 조사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하기 바람.